

「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0년 01월 20일 박찬원의원이 발의하고, 2020년 02월 0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정책 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마. 연구활동 계획 제출 및 연구단체 지원,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1조)
- 바. 연구단체 폐지 및 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13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
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
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및
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
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연구활동 계획 제출 및 연구단체 지원,
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
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(205-09)을
 신설함에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 강원도 내 정책개발비관련 연구단체 조례 입법례로는
 2개의 시군(고성군, 동해시)이 있으며, 점차적으로 조례제정이
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※ 의회비 과목(205-01~205-10)
 주요내용인 연구활동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연구단체 구성	연구활동비 지원
평창군	2명 이상	연구단체 소속의원 1인당 최고 연 500만원
고성군	3명 이상	하나의 연구단체에 최고 연 500만원
동해시	3명 이상	하나의 연구단체에 최고 연 500만원

평창군 조례안은 “연구단체 소속 의원 1인당 지원액을 최대 연 500만원”

으로 하여 정책 개발비로서 실효성에 중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.

-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

[관련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<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>

○ 의원정책개발비

① 경비성격 :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

-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, 공청회나 세미나, 간담회 등은 의회
공통경비로 편성

※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회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
(의원개인에게 지원 불가)

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

* 별도한도 추가 : (지방의원수*500만원)